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0 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이종배·서천호·박덕흠

이만희 · 김위상 · 이종욱

김성원 · 성일종 · 김용태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,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·악성화되고 있어, 이에 대한 대응을 위 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·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,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47조, 제347조의2, 제348조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7조제1항 중 "10年"을 "15년"으로, "2千萬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

제347조의2 중 "10년"을 "15년"으로, "2천만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 제348조제1항 중 "10년"을 "15년"으로, "2천만원"을 "5천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347條(詐欺) ① 사람을 欺罔하	第347條(詐欺) ①
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	
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<u>10年</u>	<u>15년</u> -
以下의 懲役 또는 <u>2千萬원</u> 以	5 <u>천만원</u>
下의 罰金에 處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	제347조의2(컴퓨터등 사용사기) -
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	
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	
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	
입력 •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	
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	
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	
득하게 한 자는 <u>10년</u> 이하의	<u>15년</u>
징역 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	5 <u>천만원</u>
금에 처한다.	
제348조(준사기) ① 미성년자의	제348조(준사기) ①
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	
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	
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	
득한 자는 <u>10년</u> 이하의 징역	15년
또는 <u>2천만원</u> 이하의 벌금에	-5 <u>천만원</u>
처한다.	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